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3나205587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29 선고 2023나20558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6 선고 2022가소264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전호성

변론종결 2023. 7. 18.

판결선고 2023. 8. 29.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6. 선고 2022가소264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71,70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되(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음을 추가한다.

위탁계약서 제6조 제1항에 의하면(갑 제1호증), 계약 당월부터 익월 말일 사이에 고객의 변심 등 이유를 막론하고 계약이 취소된 경우, 해당 계약 건은 피고의 위탁업무보수 산정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객환불정산내역에 의하면(갑 제3호증), 2021. 9. 이후에 환불한 내역을 정리하면서 결제일이 2021. 4.부터 2021. 7.까지의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설사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위탁계약서 제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서 고객환불정산내역 및 기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각 계약자별로 어떤 사유로 환불이 발생하였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계약을 취소해 준 경우에만 위탁계약서 제6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돈의 존재 여부와 범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오성우, 판사 박이규